성주군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상위법인『수도법』및 관련 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안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명변경

- 종전의『성주군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』를 『성주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』로 변경함.

○ “간이상수도”를 “마을상수도”로 용어 변경

○ “간이급수시설”을 “소규모수도시설”로 용어 변경

○ 상위법 및 규칙 등 관련 조항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수도법」제47조 및 제5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 : ‘13. 6. 14 ~ 7. 3(20일간),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『수도법』 및 관련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“간이상수도” 를 “마을상수도”로 “간이급수시설”을 “소규모수도시설”로 일부개정 하는 단순 용어 수정의 내용으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